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27

부 산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누20906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부산광역시철강판매업협동조합
피고, 피항소인	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
제 1 심 판 결	부산지방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구합23602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7. 8.
판 결 선 고	2016. 9. 30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5. 7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5. 5. 8. 취득세 등 1,272,638.100원을 0원으로 한 경정청구 및 2015. 5. 8. 취득세 등 1,875,971,880원을 0원으로 한 경정청구의 각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27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, 아래 제2항에서 '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'을 추가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지방세특례제한법'이라 한다) 제94조 제2호(이하 '이 사건 규정'이라 한다)가 정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,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신축 건물과 함께 지분별로 조합원들에게 재분양해 주었더라도 여전히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따라서 위 추징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판단

원고가 LH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이 2012. 3. 16.이고,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조합원 등에게 재매각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이 2012. 11. 26.이므로,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재매각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.

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27

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,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(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누20090 판결,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를 토대로,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, 원고가 그 조합원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재매각한 행위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추징 요건 즉 "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"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① 이 사건 규정은 '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'에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,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매각·증여를 한 이상 추징 대상으로 삼고 있고, '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'한 이상 위 매각·증여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묻지 않고 추징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.

②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한다 하더라도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이 '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'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면서, 이 사건 규정에서는 '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'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, 위 조문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면 매각·증여한 경우에는 더 이상 (취득한 자의) 직접 사용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. 한편, 원고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'직접 사용'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였다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27

제71조 제2항을 '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'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규정함이 순리이고, 이 사건 규정 또한 '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'한 경우에 추징하도록 규정됨이 논리적이다. 즉 원고 주장대로라면 양 조문 모두에서 '직접'이란 용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. 양 조문 모두에서 '직접'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이상 '해당 용도로의 사용'보다 면제사유를 좁게 설정하는 동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·증여하였다면 해당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 조문을 이해함이 합리적이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,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,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③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,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고 매각의 상대방이 조합원인 경우에 관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바, 이 사건 원고와 같은 조합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. 나아가 대법원은 조합이 원시취득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사안에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(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9468 판결), 이 사건 사안과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 대상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이는바, 위와 같은 해석은 대법원의 선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27

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형천

판사 임상민

판사 주은영